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개발공사 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 9. 2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 8. 4.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3. 8. 4.
- 다. 상정일자 : 제98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2003. 9. 2)
상정, 심사, 가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정원배 지역경제과장)

가. 제안이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되는 등 지방공기업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관련규정등을 정비하고, 기타 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고,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제1항)
-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되,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공사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제2항)
 -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도록 하고,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 되도록 규정함.(안 제21조제1항· 2항)
 - 구청장이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함.(안 제3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0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안제7조제1항을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하고,

안제11조를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여 임.직원의 겸직제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제16조제2항에서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도록 하여 직원의 임용규정을 신설하였음.

안제21조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시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도록 한 것을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해서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도록 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안제38조에서는 법제78조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경영평가의 주체를 구청장에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청장이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제68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음.

- 동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2002·3·25법률 제6665호)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김순금 위원) : 안제7조중 제1항에서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에서 그 수는 정관으로 한다의 의미는?
- 답변요지(정원배 지역경제과장) : 직원수에 비례해서 이사와 감사를 정관으로 정한다는 의미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3. 7.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되는 등 지방공기업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등을 정비하고, 기타 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고, 그 수는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1항)
- 나.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되,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다. 공사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제2항)
- 라.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년도 개시전 까지 편성하도록 하고,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도록 규정함.(안 제21조제1항·2항)
- 마. 구청장이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함.(안 제38조)

3. 근거법령

- 가. 지방공기업법(2002.3.25 법률 제6665호) 제46조, 제58조, 제61조, 제63조제2항, 제75조의2, 제78조 등
- 나. 지방공기업법시행령(2002.6.19 대통령령 제17629호)제36조, 제44조, 제68조 등

4. 조례(안) : 따로불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2003. 5.20.~6. 9)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나.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다.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21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제1항중 “3월내”를 “2월이내”로 한다.

제34조의 조제목 “(업무상황 공표 등)”을 “(업무상황 등 공표)”로 하고, 동조중 제3항을 삭제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경영평가) 구청장이 법 제7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임원) ①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p> <p>②(생략)</p>	<p>제7조(임원)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제11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p>	<p>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6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p> <p>(신설)</p>	<p>제16조(직원의 임면) ①————— —————</p> <p>②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p>
<p>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년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②~④(생략)</p>	<p>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⑤(현행 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결산) ①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3월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생 략)	제22조(결산) ①----- ----- ②(현행과 같음)
제34조(업무상황 공표 등) ①~②(생 략) ③사장은 구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250분의1 이상의 주민연서로 제2항의 자료를 요구할 때는 자료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4조(업무상황 등 공표) ①~②(현행과 같음) (삭 제)
제38조(경영평가) ①구청장은 매년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장이 면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의하여 실시한다. 1. 법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법인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③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는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종료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 종료후 4월 이내에 경영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8조(경영평가) 구청장이 법 제7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다.